

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9. 7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희 순

1. 규칙명: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제안이유
 - 공무국외출장의 심사·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직원 보호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가.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확대(안 제4조제2항)

나.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허가 기준 강화 및 주민 의견수렴
절차 마련(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)

다. 위법·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의뢰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
6항)

라.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 보호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
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
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
바란다)
- 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: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, “구성되도록 해야”를 “구성하여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5호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

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5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출장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?		
	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?		
	4.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?		
지방의정과 관련성 (국제교류, 초청 목적출장 제외)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?		
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?		
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출장자의 적합성	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	4. 출장자 중 징계·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가?		
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?		
	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?		
출장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?		
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	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※ ‘아니오’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· 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<u>주민</u>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<u>구성되도록</u> 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<u>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</u> ----- --- <u>구성하여야</u> ---.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8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제8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,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2항</u> 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	5. <u>제5항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② <u>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10조(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 ①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0조(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

<신 설>

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
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
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
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
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
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
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
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
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
는 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
직원에게 대해 비용부담 강요, 사
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
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
여서는 아니된다.